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		○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- 현행 사무처조직인 공보실, 의정담당관, 의사담당관, 의안담당관을 공보실, 의정담당관, 의사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의안담당관을 폐지하고 -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며,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- 이 외에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					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9년 2월 11일, 서울특별시장		나. 검토사항 1) 의안담당관 폐지(안 제4조) ○ 서울시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현행 시의회 사무처 하부조직을 공보실, 의정담당관, 의사담당관으로 개편하여 현행 의안담당관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. - 현재의 구조조정 방향이 대국, 대과주의를 지향하므로 4급인 의안담당관을 폐지하고 의안담당관 각 계단위 기능은 공보실, 의사담당관 등으로 이관하여 공보실, 의사담당관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.					
2.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1 담당관을 축소 조정하는 등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		2) 안 제6조 (직원의 정원) 제6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					
3. 주요골자 가. 시의회사무처 및 하부조직 규정(안 제2조 내지 제4조) · (현행) 공보실, 의정담당관, 의사담당관, 의안담당관 · (개정) 공보실, 의정담당관, 의사담당관 (△ 1담당관)		○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안담당관을 폐지하는 등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.					
4. 검토의견 가. 개요 ○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안담당관을 폐지하는 등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.		○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4조에는 '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'라고 규정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· 반면에 동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 ○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(직급별 정원)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					
현 행		개 정 안					
제4조(직원의 정원)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		제6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					
구 분		일 반 칙				별정칙	기능칙
		소계	1급	4급	5급	6급이하	
현 정원		223	111	1	16	25	69
조 정		200	99	1	13	22	63
증 감		△23	△12	-	△3	△3	△6
						△1	△10

12 (第111回-運營第2次)

의회사무처 구조조정은 총 정원 223명에서 200명으로 10.3% 축소하려는 것입니다.

- 4급 3명 축소 내역은 2개 상임위원회 축소에 따른 전문위원 2명과 의안담당관을 감축하는 것이며
- 5급 3명 축소는 2개 상임위원회 감축에 따른 의안심의담당사무관 2명과 의안담당관 사무관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.
- 6급 이하 17명(일반직 6명, 별정직 1명, 기능직 10명)은 결원인원과 의회내 기능

이 없어진 교환원을 중심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.

-의원보좌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본청 구조조정 수준에 상응하여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.

3) 직원파견 요청조항 삭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직원의 파견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	삭 제

○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직원파견 관련규정을 신설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자제12200-330('98. 9. 14)호로 당해 기관내에서의 파견은 제도적으로 불인정되므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기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되나, 필요시 직원의 근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.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改正條例案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3조제3항중 “의회 의장의”를 “의장의”로 한다.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6조(직원의 정원)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.
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7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